

# 보건과학대학 세부전공 내규

2015. 1. 19 제정  
2022. 11. 1 개정  
<보건과학대학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보건과학대학의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 세부전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세부전공에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제3조 (명칭) ①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의 세부전공 명칭은 "바이오의과학"과 "바이오식품영양과학"으로 한다.

②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세부전공 명칭은 "환경보건안전"과 "보건의료"로 한다.

제4조 (자격)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 심화전공자, 복수전공자, 학사편입자에게 허가한다. 단,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의 경우 2023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세부전공을 폐지하며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횟수)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1인 1회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세부전공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화전공자라 하여도 세부전공을 명기 할 수 없다.

제6조 (신청시기) 세부전공 신청은 졸업예정학기 개강시점에 각 학부에 개인별로 신청하여, 학부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7조 (학점이수) 세부전공을 명기하기 위해서는 세부전공 영역별 교과목을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전공신청) 심화전공자라도 세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부면만 명기되며, 두 개 이상의 세부전공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한 개의 세부전공만을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제증명) 세부전공명은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 기재한다.

제10조 (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학부 내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세부전공인 "바이오의과학"과 "바이

오식품영양과학"은 폐지한다.